

## [사 건 명] 행심 2019 - 28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학교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부존재』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① ○○○군수 및 ◇◇도의원 관련 ○○○□□병원에 강제 입원된 내역서 ② ○○○군수 및 ◇◇도의원의 출장 사무내역서 ③ ○○○□□병원에 지원한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청구서를(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 ○○학교가 접수하였고, 청구인에게 2018. 12. 00.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통지에 불복하여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2019. 1. 3. 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관되었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 결정을 취소하고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Ⅲ.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청구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 없기에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8. 12.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호,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